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·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위원회에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·수거·파기명령의 이행기간을 해당 제품의 안전성, 위반행위자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12. ~ 9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본문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,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 및 전문위원회”로 한다.

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1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이행기간 및 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

③ 제조·수입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선·파기 또는 수거 명령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 결과를 첨부하

지 않을 수 있다.

1. 법 제2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

2.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 안전부품의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

3. 법 제25조제2항제1호·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

4.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

④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선·파기 또는 수거 명령의 이행기간을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·파기 또는 수거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
- 가.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한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한 경우
- 나. 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·결과, 위반행위자의 이행 노력 및 개선·과기·수거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6조제1항제1호 중 “사항”을 “사항(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제외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·과기 또는 수거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.

별표 5 제3호 중 “또는 승강기”를 “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제20조 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3항 및 제4

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선·파기 또는 수거명령의 이행기간 중에 있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·수입업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생략)	제5조(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
<u>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u>	<u>⑧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-----</u> -----.
<u>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</u>	<u>⑨ ----- 제8항-----</u> ----- <u>위원회 및 전문위원회</u> ----- -----.
제25조(개선·파기·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해 그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·수	제25조(개선·파기·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입업자, 판매업자, 대여업자, 영업자(법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), 판매중개업자,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(이하 “제조·수입업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개선·파기·수거 또는 판매중지(이하 “판매중지등”이라 한다)를 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(생략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,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.

가.·나. (생략)

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.

- 1.·2. (생략)
3. 이행기간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2개
월 -----

-----.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이행기간 및 이행기간 연장
신청 절차

4.·5. (생 략)

<신 설>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③ 제조·수입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선·과기 또는 수거 명령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법 제2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

2.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

<신 설>

의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
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

3. 법 제25조제2항제1호·제2호
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:
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
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
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
이 실시하는 정밀진단

4.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
하는 경우: 「산업표준화법」
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
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
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위해
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
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

④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
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 제1항에 따른 개선·파기 또
는 수거 명령의 이행기간을 최
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
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
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·파기
또는 수거 명령을 이행할 수

③ (생략) 제26조(제조·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. 1. 제25조제2항 각 호의 <u>사항</u> 2. 3.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없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2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.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<u>첨부한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인 경우</u> 나. <u>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·결과, 위반행위자의 이행 노력 및 개선·파기·수거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26조(제조·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1. ----- <u>사항(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제외한다)</u>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<u>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</u>
---	---

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·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(법 제25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·제3호와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여부 등에 대한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·파기 또는 수거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-----.

<삭 제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295